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정 2023. 5. 22. 규칙 제163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양시 규칙 중에 표기된 “만” 용어를 삭제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3조(「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의 개정)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

▣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지원 신청서

- 1. 성 명 : (한자 :)
- 2. 생년월일 : (연령 : 세)
- 3. 주 소 : (통/ 반)
- 4. 연 락 처 : (HP :)

상기 본인은 안양시 동 통장에 위촉 되고자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 1.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정도)
 - 2. 이력서
 - 3. 추천인 서명부(별지 제2호서식)
 - 4. 통장 심사항목 입증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 ○ 동 장 귀하